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편드명 :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오탈자 정정	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(생 략)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5호 내지 제9호, 제17조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 ~ 5. (생 략) ③(생 략)	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(현행과 같음)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5호 내지 제9호, 제17조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45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~ 5. (생 략) 6. 집합투자업자의 합병, 분할, 분	제45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 3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집합투자업자의 합병, 분할, 분

	할합병 <u>도는</u> 영업의 양도·양수 7. ~ 10. (생략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	할합병 <u>또는</u> 영업의 양도·양수 7. ~ 10. (생략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
	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/u>